

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1998년 2월 16일

제 안 자 : 총무보사위원회
위원장 민 태 승

1. 수정이유

우리시의 장애인을 타지역 거주 장애인보다 복지관 이용에 우선토록하고 조례의 일부 조문중 부적합한 용어를 실정법상의 용어와 부합되도록 하기위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에 파주시 거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함.(안제 6조)
-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바로 잡음.(안제 5조, 제 7조)

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5조 중 “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”를
“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”로 한다.

안제6조 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생활보호대상자와 파주시 거주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안제7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2.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의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	비 고
제5조 (기구및인력)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구성 및 인력배치는 <u>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</u> 시장이 정한다.	제5조 (기구및인력) ----- ----- <u>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</u> ----- ---	
제6조 (이용대상)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의 <u>생활보호대상자를</u> 우선으로 한다.	제6조 (이용대상) ----- ----- ---- <u>생활보호대상자와 파주시의 거주 장애인</u> -----	
제7조 (이용료의 징수) ----- ----- 1. <u>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또는 부모 및 자녀</u> 2. <u>의사상자보호법 제3조의 의사자 본인 또는 가족</u> 3. <u>(생략)</u>	제7조 (이용료의 징수) ----- ----- 1. <u>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u> 2. <u>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의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와 그 가족</u> 3. <u>(위안과 같음)</u>	